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범위 확대 등 〉

■ 양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61호)

2026.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 근거 마련	3
2.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범위 확대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양문석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2025. 12. 15.
3. 회 부 일: 2025. 12.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체육인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유형별체육단체가 가맹되어 있음에도 경기단체(종목단체)에 대한 조문만 존재함.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을 위한 활동으로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등 세부적인 근거 조항이 없으며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 또한 없는 실정임

이에 장애유형별체육단체 관련 자구를 추가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범위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장애인 전문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과의 연계사업을 추가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참

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체육회 간 지원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원 대상으로 장애인 경기단체 뿐만 아니라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 ----- ----- ----- -----.
1. <u>장애인 경기단체의</u>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1. <u>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장애인 경기단체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등의</u> -----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로서 대한체육회와는 달리 장애인 경기단체뿐만 아니라 장애유형별 체육단체¹⁾가 가입되어 있음.

1)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2026년에 한국지체장애인스포츠연맹 가입예정

이들 단체에 대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²⁾³⁾, 개정안과 같이 시행될 경우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등에도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하게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의원 대표발의, '26.1.5.)이 발의되어 있음.

2) 참고자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

3) 주요 지원내역으로는 ①인건비 및 행정운영비 지원 ②장애유형별 종목 활성화 지원(생활체육, 전문인력양성, 국제스포츠교류 등 지원)으로, 사업예산은 '25년 1,456백만원(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각 728백만원)을 지원했으며, '26년 1,982백만원(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한국지체장애인스포츠연맹 각 661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2.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범위 확대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범위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 장애인 전문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과의 연계사업,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 ----- ----- ----- -----.
1. <u>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u>	1. <u>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장애인 경기단체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등의</u>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4. <u>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u>	4. <u>장애인 은퇴선수 등 지원 사업</u>
5. <u>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u>	5. <u>장애인체육인의 복지 향상</u>
<신설>	5의2. <u>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u>
<신설>	5의3. <u>장애인 스포츠클럽 및 장애인</u>

<u><신 설></u> <u><신 설></u> 6. (생 략) ② ~ ⑨ (생 략)	<u>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u> 5의4.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u>조사 및 연구</u> 5의5. 장애인 전문체육과 장애인 생 <u>활체육과의 연계 사업</u> 6.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상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의 사업으로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연계 사업’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는 관련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에 맞추어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한체육회⁴⁾, 지방체육회⁵⁾, 대한장애인체육회⁶⁾ 별 소관 사업]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u>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u>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1항

5)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6)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제1항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 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 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 원사업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 의 개발 및 보급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 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 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 한 조사 및 연구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 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 육과의 연계 사업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 하여 필요한 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 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 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안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동호인 클럽 지원 사업 등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취
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스포츠클럽 지원 등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년도	예산	주요내용
장애인스포츠클럽 및 동호인지원	‘23년	646	동호인클럽 지원(273개소)
	‘24년	646	동호인클럽 지원(273개소)
	‘25년	646	동호인클럽 지원(304개소)
		360	지정스포츠클럽지원(12개소)
장애인생활체육	‘23년	95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연구
		400	2023년 장애인생활체육조사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4년	400	2024년 장애인생활체육조사
		75	실감형 장애인스포츠 콘텐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5년	40	통합체육 안전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장애인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연계사업	'23년	1,300	5개 종목 리그전 운영
	'24년	2,014	8개 종목 리그전 운영
	'25년	2,764	11개 종목 리그전 운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개정안 제4호 ‘장애인 은퇴선수 등 지원사업’의 경우, ①장애인 은퇴선수의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②장애인 선수 등록 시 장애인 선수 등록자격이 제한적이지 아니하여 은퇴선수의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사업대상과 범위를 특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등 법률의 모호성이 있는바, 적용 대상을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하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⁷⁾⁸⁾이 발의되어 있음.

문 의 처

02)6788-5375

7) 의안번호 제2208707호,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8) 의안번호 제2212867호, 이기현 의원 대표발의

※참고자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장애인체육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체육 종목별 기반 안정화 및 유형별 장애인체육 발전 도모
-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06년~)
- **(집행기관/지원형태)**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 민간보조사업
- **(소요예산)** '26년 8,144백만원 (경기단체) 6,162, (유형별) 1,982
* '25년 7,408백만원 (경기단체) 5,953, (유형별 단체) 1,455

□ 사업 내용

-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32개 종목별 경기단체 운영비 및 인건비(단체별 3명) 지원 등
-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한국시각스포츠연맹 행정운영비 및 인건비(단체별 6명) 지원, 유형별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비 지원
- 구체적인 사업 프로세스
- 문체부→대한장애인체육회→가맹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